

## 목록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경상북도조례)(제4582호)(20211101).....	1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1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도지사의 책무).....	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1
제5조.....	1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제6조의2(청년정책 평가).....	2
제7조(청년실태조사).....	2
제3장 청년정책 심의 <sup>&amp;#8228;</sup> 의결 등.....	2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2
제9조(청년정책 참여단).....	3
제10조(연구사업).....	4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	4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4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4
제13조(청년의 고용촉진).....	4
제14조(청년의 창업지원).....	4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4
제15조의2(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4
제16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5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5
제18조(청년의 교류확대).....	5
제5장 청년의 정착지원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5
제19조(청년의 정착지원).....	5
제20조(청년의 정착분야 발굴).....	5
제21조(사후관리).....	5
제21조의2(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5
제6장 청년시설 설치·운영 등.....	5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6
제23조의2(청년의 날).....	6
제7장 보 칙.....	6
제24조(청년발전기금의 설치).....	6
제25조(수당 등).....	6
제26조(포상).....	6
제2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6
부칙 <제4582호, 2021. 11. 1.>.....	6
부칙 <제4582호, 2021. 11. 1.>.....	6
부칙 <제4582호, 2021. 11. 1.>.....	6
부칙 <제4582호, 2021. 11. 1.>.....	7
부칙 <제4582호, 2021. 11. 1.>.....	7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조례)(제4208호)(20190704).....	8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8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8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8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9
제8조(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	9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9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9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9

제12조(시행규칙).....	8
부칙 <제4208호, 2019. 7. 4.>.....	10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경상북도조례)(제3892호)(20170302).....	11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11
제1조(목적).....	11
제2조(정의).....	11
제3조(책무).....	11
제4조(계획 수립 등).....	11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11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11
제7조(투자유치 등).....	11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11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12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12
제11조(홍보).....	12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12
제13조(표창).....	12
제14조(시행규칙).....	12
부칙 <제3892호, 2017. 3. 2.>.....	12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시행 2021. 11. 1.] [조례 제4582호, 2021. 11. 1., 일부개정]

경상북도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경상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4.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4. >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리증진, 문화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 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 삭제 <2021. 1. 4.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

**제6조의2(청년정책 평가)**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평가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및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7조(청년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생활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경상북도 청년통계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4.]

### 제3장 청년정책 심의·의결 등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종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 1. 4. >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 4. >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와 기획·일자리·문화·복지·예산 등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남·여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추천한 사람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⑩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

⑪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 4. >

⑫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자료 검토 및 위임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1. 4. >

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 1. 4.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신설 2021. 1. 4. >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신설 2021. 1. 4. >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신설 2021. 1. 4. >

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 4. >

**제9조(청년정책참여단)**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정책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6. 활동보고서 발간

7.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③ 참여단 구성원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되어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 ⑤ 도의 관련 부서는 참여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고용촉진)** ①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외·사회부적응·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창업지원)** 도지사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보증료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1.]

**제16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교류확대)** 도지사는 도내·외 및 국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장 청년의 정착지원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제19조(청년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청년이 도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의 정착분야 발굴)** 도지사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1. 청년창업형 : 제품생산, 복지, IT기반조성, 마을기업 사업 등
2. 마을공동체 : 지역서비스,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등
3. 문화창작형 : 음악, 미술 등 청년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4. 기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시책 등

**제21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청년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선발단계부터 교육, 컨설팅, 지역활동에 이르기 까지의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활력회복을 위하여 청년활동과 커뮤니티 조직 결성 등 청년공동체 활동과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년커뮤니티 지원과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4.]

## 제6장 청년시설 설치·운영 등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의2(청년의 날)** 도지사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4.]

## 제7장 보 칙

**제24조(청년발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와 참여단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

**제2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부 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6. 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1. 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4.] [조례 제4208호, 2019. 7. 4., 전부개정]

경상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미취업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 “취업애로 계층”이란 청년 미취업자 중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 “중소기업”이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
3.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취업지도·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내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심리·진로·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3. 청년미취업자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 및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구인 및 고용,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 등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9. 7. 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시행 2017. 3. 2.] [조례 제3892호, 2017. 3. 2., 제정]



경상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수요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⑤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기관 등으로 본다.